

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사항

1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가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나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다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라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마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2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가.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나.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다.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라.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복지타운마리아노인요양원